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5 July 2017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

(Tel: 02-2112-0982)

OECD: Updates to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이전가격 지침서 개정본 발표

OECD는 다국적기업 및 세무당국을 위한 OECD 이전가격 지침서 2017년 개정본을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OECD 발표에서와 같이, 이전가격 지침서는 정상가격원칙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며, 이는 소득세 목적상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금번 2017 개정본은 주로 OECD/G20 기반의 "세원잠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내용에 대한 다음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BEPS Actions 8-10 (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및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2015 보고서에서 소개된 내용의 상당부분 수정. 해당 수정사항은 2016년 5월 이전가격지침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BEPS Actions 8-10 및 13에 관한 2015년 보고서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사업구조재편에 관한 지침 Chapter

IX 개정

- Chapter IV의 조세면제기준(safe harbours)에 관한 지침 개정
- OECD 이전가격 지침서의 나머지 부분 중 상기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일관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

또한 금번 개정본에는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 결정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C(95)126/FINAL]의 개정본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정 권고안은 BEPS 관련성 및 BEPS에 대한 "포괄적인 틀"의 형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Implementation issues associated with CbCR - Reporting financial information

재무정보에 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이슈

첫 번째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s, 이하 "CbCR")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다국적 그룹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에 적합한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재무정보를 CbCR의 표1(OECD 견본 서식 기준 Table 1. Overview of allocation of income, taxes and business activities by tax jurisdiction)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문점은 자료 해석상의 문제, 자료의 가용성 및 조세위험관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or 개별 재무제표?

대부분의 다국적 그룹이 직면한 문제는 표1에 제시되어야 하는 재무정보가 연결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 중 어떤 것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단일답변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채택된 접근 방식은 특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수집하는 내부 시스템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자회사 수준의 감사 재무정보가 최종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의 연결재무정보와 중요하게 다른 경우(예: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나 사업연도 말이 다른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국적 그룹내의 다른 부문(지역)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재무자료가 각 과세당국에 제공되는 것과

다를 때 현지 감사의 가능성성이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총매출액 or 순매출액?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는 순금액 기준으로 보고되는 경우(예: 이자 수익이 순금액 기준으로 보고되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수익이 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 보고시 총액기준 또는 순액기준인지에 대하여 OECD 지침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다국적 그룹들은 총액기준을 고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액기준으로 보고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의 손익보다 CbCR에 보고되는 매출액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3 부가정보에 관한 사항

상기에서 논의된 내용과 유사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다국적 그룹은 표3(OECD 견본 서식 기준 Table 3. Additional Information)에서 필요한 잠재적 추가 공개내용과 내재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표1에 제시된 재무정보와 관련하여 표 3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공개 내용은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관계가 있습니다.

표1에 공개된 재무 정보는 다국적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또는 특정규정을 위한 재무제표, 내부관리용 재무 정보 등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으나, OECD는 CbCR 작성시 매년 동일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해야 함을 명확하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표3에서는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간략히 설명하고 출처 변경 시 변경사유와 그에 따른 결과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것은 CbCR과 제출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의 작은 예일 뿐입니다. 첫 번째 CbCR을 준비하고 제출 해야 하는 다국적 그룹은 상황을 주시하며 끝까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Singapore: Draft transfer pricing legislation

싱가포르: 이전가격 법제화 초안 발의

특정 이전가격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한 싱가포르 세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상가격조건의 명확한 정의와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는 독립된 두 당사자가 비슷한 조건으로 거래 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의 재구성(re-characterization)에 관한 내용
- 납세자의 적절한 이전가격 동기화 보고서 유지 사항의 성문화
-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밟고 있는 사안에 대한 세무 당국의 추가징수 가능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의 개정
-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항소시 적절한 이전가격 동기화 보고서에 의한 입증

해당 초안에는 세무당국에 의한 이전가격조정액에 대한 5%의 가산세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Vietnam: Tax and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echnology transfers](#)

베트남: 기술이전에 따른 조세 및 이전가격의 영향

조세 및 이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전에 관한 신법안이 베트남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신규 계약 등록 요구사항

새로운 기술이전법령(No. 07 / 2017 / QH14)이 2006년의 법안을 대체하며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017년의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다음 기술이전 계약은 과학기술관할당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타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기술
- 베트남에서 타국으로 이전되는 기술
- 과학기술과제수행결과에 대한 등록증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의 자본이나 예산이 사용되는 국내 기술 이전

조세 및 이전가격 관점에서의 영향

베트남에서의 세무조사시에는 과세당국이 기술이전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기술이전계약등록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2006년의 법령은 기술이전계약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과 함께 기술이전계약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전비용이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더욱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술이전가격은 세법에 따라 감사 및 시행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 명 이상이 국가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기술 이전
- 지주회사 내의 특수관계자 간 기술 이전
- 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기술 이전

2017법안에 따라 세무당국은 법인세 목적의 공제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이전기술에 대한 시장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문서화 자료 및 감사 받은 기술이전 문서화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술수취법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